

한국건설안전학회

상시위원회 운영 규정

2017.10.11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건설안전학회(이하 '우리학회'라 한다) 정관 제18조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정관 제18조에 의거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 심의 후 의결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에서 필요 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조직 및 기능)

1. 위원회는 정관 제2장에 의거한 학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2. 각 위원회의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① 위원장: 회장이 위촉하며, 상시·기술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인준한다.
 - ② 부위원장, 간사: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산/학/연/관에 서 고르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2개 이내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권고한다.
 - ③ 위원: 위원장의 책임 하에 위원을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산/학/연/관에서 고르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3개 이내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권고한다.
 - ④ 분과위원장: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의 책임을 진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2년)와 동일하다.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간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1. 회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둔다.
 - ① 상시위원회: 정기적,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 ② 기술위원회: 우리학회의 기술분야와 관련된 기술개발, 정보확산,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특별위원회: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회무에 따라 구성 할 수 있다.
 - ① 상시위원회: 기획운영, 논문편집, 학술교류, 대외협력, 홍보서비스, 기타 지속적인 업무가 필요한 회무.
 - ② 기술위원회: 건설사고조사, 건설안전기준정책, 건설안전시스템, 건설보건, 예방문화, 전문건설, 토목안전, 건축안전, 가설안전, 건설품질계측, 건설환경, 설계안전성평가, 건설기계, 재생공사안전, 기타 우리학회와 관련된 기술분야의 회무.
3. 위원회 회무의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위원회는 최소 격월에 한번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단,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서면결의 등)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7조 (안건제출)

1. 위원회의 회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안건을 제출하여 위원장 회의에 상정한다.
2. 제1항의 경우,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 활동보고)

활동사항 보고는 위원장 회의 및 이사회에 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위원회는 연간 활동내용의 책자발간을 권고한다. 다만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시 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도 책자로 발간하여 보고한다.

제9조 (위원회 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본회의 세입세출 원칙을 따르며, 정관 제31조(②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수립하고,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사업계획서)

각 위원회는 매년도 총회개최 전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1조 (운영규정 및 위원회 개편)

1. 본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2. '별표'개정은 기획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출하여 회장이 승인한다.
3. 매년도 활동보고 및 사업계획서 평가 후,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회를 개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바로 시행한다.